

<p>어제야 된다는 그런指摘들이 議員님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委員會條例를 改正하는 차제에 아예 그것을 통일시켜서 生活環境委員會로 보내든가, 아니면 財務經濟委員會에서도 委員님들께서 말씀하시듯이 아예 地域經濟局을 그쪽으로 떼어가든가 하는 그런 方式으로 해결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p> <p>특히 議會라는 것이 行政府를 견제하고 民主主義를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議會 內에 불합리한 요소가 있고 問題가 있다면 議會 스스로 그것을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p> <p>그래서 이런 問題에 대해서는 議會 스스로 議員님들 서로 합의하고, 양보할 것은 서로 양보하고 해서 이런 問題는 원만히 처리했어야 당연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p> <p>오늘 사실 이 問題가 쉽게 결정나지는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이런 問題에 대해서 우리가 市議會 內部에서는 이런 問題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p> <p>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p> <p>○副議長 李聲九 朴一男議員의 發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p> <p>3代 議會 마지막때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때 이 問題를 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 問題는 各 該當 常任委員會 委員들간에 問題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소견으로는 任期 다음 後半期 가기 전에 그때 한 번 이 問題를 再考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그냥 進行하겠습니다.</p> <p>本 件에 대해서 더 異議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p> <p>異議 없으시면 이상 2件이 각각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議事棒 3打)</p> <p>.....</p> <p>(參 照)</p> <p>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민방위국”을 “민방위재난관리국”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4호가목 중 “산업경제국”을 “지역경제국”으로 한다.</p> <p>동조제1항제4호나목 중 “청소사업본부”를 “환경관리실”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5호가목 중 “보사환경국”을 “보건사회국”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7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국”으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8호가목 중 “도로국”을 “기술심의관”으로 하고, 동조제1항제8호 나목 중 “종합건설본부”를 “도로국”으로 한다.</p> <p>동조제1항제8호다목 중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를 “건설안전관리본부”로 한다.</p> <p>제5조제1항제10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동조 동항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가목, 마목을 아래와 같이 한다.</p> <p>가. “교통국”을 “교통관리실”로 한다.</p> <p>라. 도시철도공사에 관한 사항</p> <p>마. “교통방송”을 “교통방송본부”로 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26일부터 적용한다.</p> <p>.....</p> <p>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증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p> <p>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의정활동비증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 중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p> <p>제5조제1항 중 별표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다음 페이지에 계속)</p>
---	--